

2005년 수의계 10대뉴스

10대 뉴스

1.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 개최 및 임원개선
2. 수의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
3. 공익수의사제도 시행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 “수의사 수급 및 장단기 전망” 연구용역 실시 및 심포지엄 개최
6. 수의과대학 신설저지관련
7. 제24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아·태 지역회의 개최
8. 이영호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관련
9. 조류인플루엔자 예보 발령에 따른 수의사행동지침 마련
10. 2005년도 천연기념물 관리교육 개최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대행 계약 체결

기타 소식

- “수생동물질병 수의사회” 창립, 산하단체 가입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06년도 회원명부 발행
- 우리회 첫 임직원 Workshop 개최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협회정보화 지원사업 계약
- 참여연대,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 보고서” 발표
- 농림부 “항생제 사용 절감 연구모임” 운영
- 우리회 이우재 명예회장 한국마사회장 취임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원장 취임
- 한국동물복지협회 “반려동물 복지 컨퍼런스 개최”
- 일본·대만 등의 동물검역규정 변경
-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일부변경
- 반려동물 건강수첩 제작

1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 개최 및 임원개선

우리회에서는 2005년 2월 28일 수의과학회관 5층 시청각강당에서 재적대의원 116명 중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요안건으로는 2004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안) 의결, 임원개선(안) 의결,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 의결, 정관개정(안) 의결이 있었다.

제2호 안건인 임원개선(안)의 의결에 따라 정영채 전 수석부회장이 만장일치로 우리회 제21대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각 시·도지부에서는 임원선거를 통하여 신입지부장을 선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2005년도 사업기본방향 중 사업모토는 “존경받는 수의사, 신뢰받는 수의사회”였다.

2 수의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지난 5월 31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7546호)이 개정·공포(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자만 시



2005년도 정기총회

협에 응시하게 하는 한편, 가축방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세부내용

-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제9조제2호)

현재는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학의 학제와 관계없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국내 수의학제가 1998년에 6년제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권한의 이양 등(제21조, 제22조 및 제30조제1항)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수행하는 공수의(公獸醫) 위촉 및 지도·감독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이양하고, 이에 따른 시·군의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도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현재 농림부장관이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하는 지도·명령을 앞으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도 할 수 있도록 함.

- 면허정지처분에 따른 진료업의 금지(제32조제4항 신설)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사유로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정지기간 중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함.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수의사법시행령과 수의사법시행규칙도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입법과정 중이다.(11월 25일 현재 법제처 심사 중)

개정 입법과정중인 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의사면허 효력정지처분 사유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수의사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윤리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세부내용

- 수의사법 적용대상 동물의 정의 조정(안 제2조)
수의사법적용 대상의 동물을 '사육하는' 동물에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육하지 않는' 동물도 포함하여 적용대상이 확대됨

-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기능 강화(안 제4조)
수의사 국가시험과목 개편, 향후 문제는행식 출제방식 도입 등 시험제도 개선과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시험 때마다 구성하고 있는 국가시험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위원회 기능을 현행 시험문제 출제, 합격자 사정 외에 시험제도 개선, 출제위원 선정 등으로 확대함

- 수의사회의 윤리위원회 설치근거 신설(안 제18조의2)
수의사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한 윤리확립을 도모하고자 수의사회는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 의견제시 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수의사·동물병원에 지도·명령범위 확대(안 제20조)

수의사법상 농림부장관 등은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명령을 할 수 있으나 현행 시행령상 동물병원에 대한 시설개선의 지도·명령 등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의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때 등에는 동물병원외에 수의사에 대하여도 지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개선외에 업무개선에 대한 지도·명령도 할 수 있도록 함

- 수의사 면허정지처분 사유 신설(안 제20조의2)
법 개정으로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사 면허정지처분 사유중 중요사항은 법에 정하고 그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잉진료 행위 등 면허정지처분 사유를 이 령에 정하고, 허위·과대광고 및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를 면허정지처분 사유에 추가함

개정 입법과정중인 수의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1998년 수의학제가 6년제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수의사시험과목을 개편하며, 수의사시험 응시 및 동물병원 개설신고시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의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세부내용

-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원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2조 및 제7조)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따른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응시원서 제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던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합격자 발표후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함

- 수의학제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개편(안 제6조 및 부칙 제1조)

현행 수의사 시험과목은 1974년에 정해진 후 1998년 수의학제의 6년제 개편과 교과목 다양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용역 결과 등을 감안하고 의사국가시험 등 유사한 시험 제도와 외국사례 등을 참작하여 개편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시험과목·시험방법 등을 이 규칙에 정하고, 시험과목을 현행 10과목에서 4개분야별 과목으로 개편하되, 대학·학생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 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범위 조정(안 제8조)

부상당한 유기(遺棄)동물·야생동물 등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에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행위를 추가함

-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 신설(안 제8조의2 및 별표 1)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을 의료법과 같이 부령에 규정하고,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개선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동물병원

의 세부시설기준을 이 규칙 별표로 정하고, 수의사외의 자가 개설시 갖추어야 할 시설에서 기동장비 및 그 보관시설을 제외하며, 산업동물전문 병원등 현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일부시설의 설치를 면제함

- 기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수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의 서식과 폐사진단서 보존기간을 정하고 진료부에는 사용한 마약 등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동물병원 개설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의사진단서를 제외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같음하며, 변경신고 대상에서 당초 설치한 기구·장비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5조)

3 공익수의사제도 시행

공익수의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지난 6월 1일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제정(안)과 병역법개정(안)이 발의(신증식의원 대표발의)되었다.

이후 병력자원의 감소에 대한 우려를 보였던 국방부 및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등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우리회를 비롯한 수의계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현재 관련법안이 각 해당소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에서의 입법과정 중 마무리 단계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초 2006년부터의 시행을 예정하였으나 6월에 발생한 총기 사건 등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 다소 입법과정에 차질이 있는바, 농림부 및 관계기관

등에서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공익수의사제도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취득한자를 병역법에 의하여 공익수의사로 편입하여,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에 의거 검역원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등에서 군복무를 대신하여 3년간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제도이다.

공익수의사제도관련 업무 추진 현황

1. 2005년 이전

- 2002년 10월 : 공익수의관에관한법률 제정 (안) 발의(이우재의원 대표발의/전 대한수의사회장)
- 2004년 2월 : 병역법 개정(안) 발의(이우재의원 대표발의 / 전 대한수의사회장)
- 2004년 5월 : 병역담당 부처 등에서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축소방침을 들어 반대입장 표명(2004년 5월 16대국회 임기만료로 법안 폐기됨)
- 2004년 8월 25일 :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계기로 농림부에서 “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 발표(국무조정실)

2. 제254차 임시국회 기간 중 업무추진현황

- 2005년 6월 1일 :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 제정 (안), 병역법 개정(안) 발의(신중식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수의사를 대상으로 군 대체복무인 “공익수의사” 제도를 도입
 - 공익수의사는 농림부소속 계약직 공무원으

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

- 공익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은 3년
- 공익수의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여비 등을 지급

○2005년 6월 08일 : 전국수의과대학학장협의회 개최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개별 홍보담당자 선임 등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토록 전 수의계가 노력

○2005년 6월 10일 : 대한수의사회 정영채회장, 김옥경수석부회장, 강호사무총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및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위원에게 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

- 서울대 수의대 양일석학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면담 및 필요성 설명

○2005년 6월 20일 : 국회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 서울대 양일석학장 및 국방부 양한승중령 진술
- 공익수의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

○2005년 6월 21일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 개최에 따른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안” 심의 통과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공중보건의 등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통과

○2005년 6월 22일 : 국회 농림부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안”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병역법중개정법률안” 상정하여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결

- 제254차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 개최 불투명
- “병역법중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계류

○2005년 6월 24일-26일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 병역법개정안과 동시 상정위해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 계류 결정

3. 제256차 정기국회 기간 중 업무추진현황

○2005년 11월 21일 : 국방위원회 제4차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 “병역법개정(안)” 심의 통과

4. 이후 추진일정(예정)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룬 후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익수의사에관한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동시에 검토, 심의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입법과정이 진행될 예정임.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난 10월 1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농림부공고 제2005-130호) 되었다.

개정이유는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및 유기(遺棄)동물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며, 반려(伴侶)동물 사육 증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이다.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동물보호시책 수립 의무화

(1) 반려동물 사육 증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동물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함

(3) 종합적인 동물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동물보호가 강화되고 국가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반려동물등록제 시행근거 신설

(1)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면서 유기동물이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2)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은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되, 시행시기·등록대상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분실에 따른 소유자 확인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 (1) 반려동물 관리소홀로 개에 물리거나 개회충 등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2) 반려동물은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반외출시 목줄을 부착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3) 반려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할 경우 인수공통질병 예방 등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범위 구체화·확대

- (1) 현재 금지행위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위반시 처벌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 (2)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도박·영리·오락 등을 위하여 동물에게 고통·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도 확대함으로써 확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신설

- (1) 동물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등 보호가 미흡함에 따라 보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2) 동물의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난폭운전의 금지 및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차량의 사용 등 준수사항을 정함

- (3) 동물 운송에 따른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 (1) 유기동물에 의한 쓰레기봉투 훼손 등 생활불편 및 질병전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기동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2) 기초자치단체장의 보호시설 확보를 의무화하고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의 보호시설 설치 또는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함
- (3)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보호의무를 강화할 경우 유기동물 보호와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동물실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

- (1)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실험 시행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2)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함
- (3) 동물실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등 신설

- (1)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윤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2) 실험시설에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정 실험은 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험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3)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자. 반려동물 등 판매업·장묘업 제도화

- (1) 병약한 동물 판매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동물사체의 불법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반려동물·실험동물 판매업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반려동물장묘업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일정 연령미만의 동물은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
- (3) 동물판매업·장묘업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경우 유기동물 발생억제, 인수공통질병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 (1) 동물판매 등 관련업종 종사자에게 관계법령,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2) 동물판매업자·장묘업자와 그 종업원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3) 관련업종 종사자가 동물관리 등에 관한 소양교육을 이수할 경우 공중위생상의 위해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

- (1)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임

- (2)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공무원)과 명예감시관(민간)을 지정(위촉)하되,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동물보호감시관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전문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타.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 강화

- (1) 동물 학대행위자 및 동물판매업자·소유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2) 벌칙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소유자·판매자 등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 (3) 학대행위 방지 등 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수의사 수급 및 장단기 전망” 연구용역 실시 및 심포지엄 개최

우리회(회장 : 정영채)에서는 최근 3년간 일부대학에서 수의학과 신설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여 이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밝혀 왔으나 최근에도 수의사 직무환경과 수급에 관한 현황을 곱해하여 대학의 이미지 제고만을 위해 수의과대학 신설의도를 보이는 일부 대학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회에서는 임상분야 등 수의사공급과잉이 지적되는 분야를 비롯 현재 수의사의 직무환경 및 수급현황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수의사 수급현황 및 장단기 전망”에 관한 연구용역 (용역수행 : 이홍식 교수 / 전 대한수의학회)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12월 2일 심포지엄을 통해 (서울 올림픽파크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수의사 수급상황에 대한 우리회 공식입장으로 확정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수의사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연구자인 이홍식 교수와 이승욱 교수가 제1주제로 세부적인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였고, 제2주제로 Dr. Yamane Yoshihisa(일본수의사회장, 동경농공대 교수)가 “일본의 수의사 수급과 수의학 교육개혁”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자로는 학계에서 충북대 수의과대학장 강종구 교수, 공직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원장(이오수 병리과장 참석), 업계에서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약품기술연구소 박종명 소장, 소동물분야에서 한국동물병원협의회 강종일 회장, 대동물분야에서 서울우유임상수의학연구회 송회락 회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종합결론을 통해 대정부결의문을 채택하였다.

6 수의과대학 신설 저지관련

충청남도에서 공주대학교 수의학과 신설과 관련에 농림부에 건의하였고, 지난 8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림부로 수의학과 정원 조정 협의요청(110명 : 전북, 전남, 경북지역)해 옵에 따라 우리회에서는 수의사수급관련 연구용역실시 내용과 신설불가사유를 교육부, 농림부, 생산자단체 등에 홍보하였다.

또한, 우리회 정영채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각 수의과대학 등에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신설불가사유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개정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에 농림부에서 신설반대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회신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장기수의사 인력수급계획에 대한 용역 실시를 건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는 공주대학교 수의학과 신설과 관련 이군현의원 주최의 “한국 수의학과 의 현실과 발전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어 우리회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보인바 있다.

□ 이군현의원 주최 “한국 수의학과 의 현실과 발전방향 토론회”

○토론회 개요

- 일시 : 2005년 9월 5일(월) 09:30~11: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공주대학교 위주의 토론회 개최에 따른 수의계 대응

- 대한수의사회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

- 공주대학교 수의학과 신설과 수의계 내부의 증원의견에 대한 효과적인 반대의견 대응

- 토론회에 적극적인 반대의견 개진

- 전국에서 200여명의 수의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의계 의견 전달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우리회에서는 2002년 동덕여대 수의학과 신설계획에 따른 대처에서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3항(의사 등을 양성하는 대학 학과의 신·증설 시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토록 규정)에 수의사를 넣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 2004년부터 위 조항을 준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의학과와 신·증설 요구 시 농림부에 의견제시 요청

○교육부에서는 2005년 입법계획에 위내용을 반영

○입법예고

- 일시 : 2005년 10월 7일

- 주요내용 : 수의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양성학과 정원관련 부처 사전협의 명시

- 진행경과 : 수의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가 있어 입법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2005년 중 통과 전망

7 제24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아·태 지역회의 개최

농림부에서는 2005년 11월 15일부터 18일(4일간)까지 홀리데이 인 서울 호텔에서 Dr. Vallat 등 사무국 요원과 19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가축 방역 책임자 등 총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아·태 지역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2003년 11월 뉴칼레도니아에서 개최된 제23차 OIE 아·태지역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차기 지역회



한국수의학과와의 현실과 발전방향 토론회

의 개최지로 추천 2004년 2월 15일 OIE 사무국에 수락 통보하게 됨으로써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회는 OIE 아·태지역회의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등 행사 전반의 업무진행에 큰 역할을 하였다.

금번 회의의 기술의제는 1. “지역내 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질병” 및 “아시아내 BSE의 역학적 분석” 등 기술의제에 대한 토의 및 역내 협력방안 등 권고 2. “제4차 OIE 전략계획”에 대한 설명 및 회원국 가축질병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교환 3. 지역내 구제역 소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활동상황 보고 4. 축산·수산관련 현장 시찰 등이었다.

또한 금번 회의의 현장시찰로는 육상동물과 수상동물 전문가 현장시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육상동물 현장시찰은 참석자 모두가 준비위원회에서 미리 준비한 방역복 및 장화를 착용하고 하림과 농협 가축개량사업소를 방문하여 한국 가금산업에 대한 홍보 및 가금질병 방역에 대한 안내, 한우개량상황과 우리나라의 선진 체세포복제기술의 홍보



이지역회의

및 농장시찰의 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상동물 현장시찰은 해수부 서해연구소 및 코엑스 수족관 시찰 등 국내 육상·수상동물의 현황을 다양하게 홍보·안내하는 계기가 되었다.

8 이영호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관련

지난 9월 9일 이영호의원 대표발의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우리회에서는 각 기관 및 단체 등에 검토의견서를 전달하여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각 수의계 전체의 활동이 이어졌다.

(1) 법안발의

- 발의일 : 2005년 9월 9일(금) 발의
- 발의자 : 이영호(대표)·한광원·이상배·이정일·신중식·우윤근·장경수·조일현·최성·염동연·이시중·윤원호·신학용·안병엽·김교홍·안홍준·

안민석의원(17인)

□ 주요내용

- 수의사의 진료대상인 동물의 정의에서 어패류를 삭제
 - 수의사법제2조(정의)제2호에서 어패류 제외
 - 사유
 - 수산질병관리사와 업무가 중첩되어 혼란 야기
 - 육상동물과 수산생물은 근본적으로 다른 생태학적 특성
 - 수산질병관리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 구축
- 수의사법제10조(무면허진료행위금지)에 자가진료 허용내용 삽입

(2) 수산질병관리사 제도 현황

- 해양수산부의 “수산질병관리사제도”추진 내용
 - 2000.08.08 : 해양수산부에서 “기르는어업육성법” 입법예고
 - “어의사” 시행
 - 2000.08.28 : 우리회 해양수산부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수생동물의 질병예방과 치료는 수의학의 한 분야이므로 별도 면허자의 양성은 불가함
 - 수의대생 반대집회 개최 등 전 수의계의 반대투쟁
 - 2002.01.14 : 법률제6611호로 “기르는

- 어업육성법” 제정
 - “어의사”를 “수산질병관리사”로 변경
 - “어의병원”을 “수산질병관리원”으로 변경
- 2004.08 : 제1회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실시(40명 합격)
- 2005.02 : 제2회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실시(43명 합격)
- “수산질병관리사제도”관련 학과 현황
 - 부경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 정원 : 30명
 - 교수 : 6명(어병예방학, 약리학, 진단생화학, 병리학, 기생충학, 환경독성학)
 - 대부분의 전공과목이 전공선택으로 구분
 - 군산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 정원 : 40명
 - 교수 6명(수종병리학, 미생물학, 혈액학 및 해부병리학, 약리독성학, 면역학 및 바이러스학, 생리학)
 - 대부분의 전공과목이 전공선택으로 구분
 - 여수대학교 수산생명과학부
 - 정원 : 70명
 - 교수 7명(예방학, 미생물유전학, 조직학 및 해부학, 바이러스학 및 기생충학, 환경독성생리학, 약리학, 바이러스생태학)
 - 대부분의 전공과목이 전공선택으로 구분
- (3)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회 의견
 - 어류질병분야는 수의학의 한 분야임
 - 수산생물, 특히 어류의 해부, 조직, 생리 그리고 병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모든 학술적인 용어의 근간이 수의학에서 왔으며, 이에 따라 질병의 진단 및 치료도 수의학분야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음
 - 의학은 생체자체의 연구보다 병원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여 기초의학적인 지식의 증대를 위하여 수의학과는 6년제 학제개편을 통하여 양질의 수의사를 배출시키고 있으며, 이미 제주대·경상대 수의과대학은 어류질병쪽으로 특성화 되어 있음
 - 수산업(양식어업)이 발전한 유럽 및 북미에서도 수의사들이 어패류의 질병을 담당하고 있음
 - 가장 수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국가인 노르웨이에서도 어패류질병을 관찰 하고 있는 것은 수의사들이며
 - 이러한 수의사들이 동물질병 및 면역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류질병 및 면역학을 발달 시켜서 어류질병 치료 및 백신의 개발을 가져왔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어류양식생산국가가 됨
 - “수산질병관리사”는 양식어류에 대한 진료에 한정되어 진료를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상어 및 해양동물에 대한 진료는 아직도 수의사만이 할 수 있음
 -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 이렇듯 어류질병분야는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도 수의사의 업무범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이기주의와 학문왜곡에 대한 도덕적인 불감증에 따라 만들어진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철폐하고
- 수의사에 의한 어류질병관리 체계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계 대응

- 우리회에서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설득작업 및 농림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협조
 - 우리회 정영채회장 전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득작업 및 농림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협조
 - 법 내용의 허구성 및 절차적인 오류 등에 대한 지적
 - 농림부 반대의견서전달
 - 의견서전달 및 입법불가사유 홍보
 - 농해수위 전문위원 방문 설득
- 우리회 각 지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의사법 개정(안)”의 모순점을 설명하는 등 입법저지활동 수행
- 3개지부(서울, 인천, 경기)와 동물병원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투쟁조직을 결성하여 일인시위 및 사이버 시위 등 수행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의 모임 발족
 - 위원장 : 홍하일
 - 집행부 : 4개단체 총무(상무)이사가 집행부로 참여

- 2005년 9월 26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시작

- 전국 수의학도 총결기 대회 개최 및 성명서 발표

○지난 10월 24일(월) 전국수의학도협의회(의장 : 이성원, 충북대)에서는 여의도 국회앞(구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전국 수의학도 2,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호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평화적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수의학도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개정(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수산동물질병분야는 수의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역관련 업무와 인증역시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수의학을 비롯한 학문을 왜곡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처이기주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로 공중보건과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수의사에 의해 수산질병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기대회에는 우리회 정영채회장과 한나라당 이인기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홍하일대표 등이 참석하여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9 조류인플루엔자 예보 발령에 따른 수의사행동지침 마련

지난 '03년 12월부터 '04년 3월까지 전국 19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530여만 마



전국수의학도궐기대회

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1,500억원의 직접적인 손실과 축산물의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2차적인 경제적 손실을 겪은 바 있다.

외국의 경우 2003년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올해 7~8월 러시아·몽골 등에서 발생하여 북방철새 도래시기인 겨울철에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림부에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였고 10월 14일 조류인플루엔자 예보를 발령하였다.

이에 우리회에서는 이사회의 긴급결의를 거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에 따른 수의사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16개 각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에 하달하고 전국 수의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행동지침을 전달하였다.

우리회 정영채회장은 전국 수의사들에게 “조류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업무

를 수행하는 임상수의사들의 예방 및 예찰활동과 조기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동물 질병의 방역과 축산물의 안정성을 지키므로써 국가적 재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동지침 일부 발췌

- 조류인플루엔자 예보 발령에 따른 수의사 행동지침

1. 예찰 및 홍보활동 강화

○ 닭·오리 등 조류 사육 농가 방문시 농가에 서 실시해야 하는 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시여부 등을 확인,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지도를 실시함

농가 방역 행동수칙

- ▲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 1588-4060, 1588-9060)

▲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 동물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 추가 직접 구입·운반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 닭·오리 등 조류 사육 농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관리대상 지역에 대한 임상 관찰을 강화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 발생시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각 지역 방역기관(첨부)에 신고해야 함

※ 집중관리 대상지역

울산(울주), 경기(이천·양주/안성·평택·포천·고양·김포·용인·화성), 충북(음성·진천/청원), 충남(천안·아산/연기), 전남(나주/영암·함평), 경북(경주), 경남(양산)

2.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견시 수의사의 행동 지침

○ 발생 신고 및 응급조치

- 농장에 도착하면 1회용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환축을 발견한 경우 축주에게 환축이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임을 설명하고, 즉시 관찰지 시·읍·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전화 등으로 신고한다.

- 신고후 시·도 가축방역관이 농장에 도착할 때 까지 농장을 떠나지 말고 축주에게 다음의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농장의 긴급방역조치

▲ 확산방지를 위하여 의심축을 격리시키고 모든 사육동물(개·고양이 등)을 묶거나 축사 문을 닫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하고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역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동력분무기나 휴대용분무기가 있으면 설치한다. 또한 각 축사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소독액으로 교체한다.

▲ 축주와 관리자, 가족에게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질병 등)에는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을 허

용한다.

- ▲ 농장에 사람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을 시킨다.
- ▲ 농장 사육시설, 옥외, 농장 밖으로 알, 사료, 퇴비, 계분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 ▲ 방충, 방서시설을 확인·설치하고 배수구를 폐쇄한다.

○가축방역관의 도착

- 가축방역관이 도착하면 모든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인계한 후 시료채취 등 가축방역관의 업무에 협조한다.

○질병 발생 농장에서 떠난 후 방역조치

- 농장을 떠날 때는 1회용 방역복을 벗어 소독 후 소각·폐기 처분하고,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체·의복·신발·안경 및 진료기구·가방 등 휴대한 물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며 타고 온 차량에 대하여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착용한 의복을 벗고 깨끗한 다른 의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수세한 후 귀가하도록 한다.
- 귀가 후 다시 차량, 진료기구, 기타 휴대용구, 의복, 신발 등을 완전히 소독하고 목욕을 한 다음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는다.
- 정밀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니라는 연락이 있기 전까지 외출을 금하고 조류 등 감수성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과 만나지 않는다.

-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될 경우 최종 접촉일 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수성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한다.

3.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에 따른 대국민 홍보강화

-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일반인에게 바이러스 전파방법 등 질병발생에 대한 대응조치를 안내·홍보함
 - 닭·오리 농장 및 철새도래지, 조류서식지의 출입을 삼가
 -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므로 손을 자주 씻고 환기를 잘 시키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함

-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오해로 인해 축산물 소비위축 등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

10 2005년도 천연기념물 관리교육 개최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대행 계약 체결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우리회와 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천연기념물(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관리교육을 전국 5개도시(서울, 전주, 대구, 청주, 춘천)에서 수의사 151명, 공무원 및 관련단체, 학생 40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금번교육은 2003년도 교육에 이어 2번째 실시

하는 교육으로써 천연기념물 지정 야생동물의 빈번한 사고 발생과 동물치료소의 국내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치료 및 관리기술, 경험 부족으로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고, 특히 국내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기술은 극히 일부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어 일반 동물치료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야생동물의 치료·구조·관리 및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2005년 10월 20일(목)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5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9제2항(문화관광부령 제121호 2005.7.28 개정)에 의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로 대한수의사회를 선정하여 우리회와 문화재청간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 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에 따른 대행업무로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 업무, 기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대행기간은 2005년 10월

20일부터 별도의 계약 해지일까지로 하였다.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의 지급범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5제1항에 의거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동물치료소를 지급대상자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동물치료소가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치료경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 진료 보수기준」 범위 내 청구여부 등을 심사하여 14일 이내에 신청금액을 확정·지급하고 그 사항을 치료경비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지급신청 치료경비 중 「천연기념물 동물 진료 보수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치료경비심의회를 개최하여 치료경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료경비심의회는 문화재청 담당공무원 1인, 동물치료소 수의사 2인, 대한수의사회 1인 등 5명 이내로 구성하였다.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천연기념물 구조 치료 관리 시스템 유지비, 송금수수료, 소모품비 등)는 국고를 지원받아 수행하게 된다.



기타 소식



수생동물질병수의사회 회의개최

“수생동물질병 수의사회”창립, 산하단체 가입

지난 11월 11일 수산질병관련 수의사들의 단체인 “수생동물질병 수의사회(회장 : 허강준)”가 창립되었다.

현재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개정(안)” 등 역할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바, 수산질병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들이 모여 학술정보를 교류하고 수산질병관련 수의사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능 단체로 “수생동물질병 수의사회”를 창립하였고, 우리회 산하단체로 가입하였다.

수생동물질병 수의사회는 11월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신종질병연구동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첫회의를 통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단체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단체를 결성하였고 같은날 개최된 우리회 제3차 이사회에 긴급안

건으로 상정되어 이사회결의를 통해 산하단체로의 승인되었다.

임원으로는 초대회장에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허강준교수, 부회장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장환 연구관, 총무에는 경상대학교 정태성교수, 간사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성준연구사가 선출되었고, 현재 2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허강준회장은 “수생동물질병 수의사회는 수생동물질병의 연구, 예방, 치료와 기술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산양식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분야와의 학술교류와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고, 사무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두기로 하였다.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 6월 11일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개정사유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시 허가를 받던 품목중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약사법에 의한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며,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기준을 규칙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던 의료기기 관련규정이 의료기기법으로 분리 제정(2003. 5.29.)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에 우리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외품에 관한 기준과 관리 강화, 주의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 및 수의사 사용지시에 의한 사용, 동물

용의약품의 도·소매 구분, 동물약국 및 동물병원의약품광고에 대한 제한 및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입법예고된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 관련 행정절차 개선

(1)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를 위해서는 품목 특성에 관계없이 검역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서류 구비 등에 따른 부담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현재 검역원장으로 부터 제조품목 허가를 받고 있는 품목중 동물약품공정서·대한약전 등에 기재된 품목으로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은 신고하도록 하되, 위생용품 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 신고하도록 함

나. 신약 등의 재심사에 관한 규정 신설

(1) 신약 등은 품목허가후 일정기간 경과할 경우 안전성 등에 대한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인체용 의약품은 재심사를 하고 있으나, 동물용 의약품은 재심사대상·절차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다.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제한대상 확대

(1) 동물용의약품의 원료로 반추동물 유래물질 등이 사용될 경우 소해면상뇌증 등의 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라.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보완

(1) 동물용의약품 제조과정에서의 품질관리와 신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고품질우수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마.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 절차 신설

(1) 의료기기법 제정·시행(2004. 5.30.)으로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제 및 수리업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및 수리업의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 동물용의약품 판매 관리제도 보완

(1) 동물용의약품이 환각제로 악용되는 사례(2004. 4월 언론보도)가 발생하는 등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유통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사. 동물약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도 신설

(1) 약사법에 의하여 인체의약품은 약사심의위원회에서 중요 정책결정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는 바, 동물약사 관련업무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

(1)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검역원 고시)”과 제조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워크샵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함에 따라 동기준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2006년도 회원명부 제작

우리회에서는 매 3년 발행주기인 회원명부를 2002년도에 이어 2006년도 명부를 발행하고자 진행중에 있다.

금번 회원명부는 2005년도 11월 30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발행 시기는 금년도 12월중 또는 2006년도 1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편집구성은 각 시·도지부 연혁 및 임원소개, 회원 인적사항 및 사진을 인쇄하게 되며 각 해당 지역별로 임상과 일반으로 구분하였다.

우리회에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수의사에 대해서는 기타로 구분하여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게재하였고, 면허자 전체를 직업군별, 근무처별로 정

리하여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회원명단을 가나다순을 정렬하여 색인화 함으로써 해당 페이지 찾기를 용이하게 하였다.

부록으로는 수의축산관련 기관·단체·대학·학회·업체 주소록 등을 수록하여 수의·축산관련 기관 및 업체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회 첫 임직원 Workshop 개최

지난 6월 3일(금)부터 6월 4일(토)까지 분당소재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우리회 임직원 Workshop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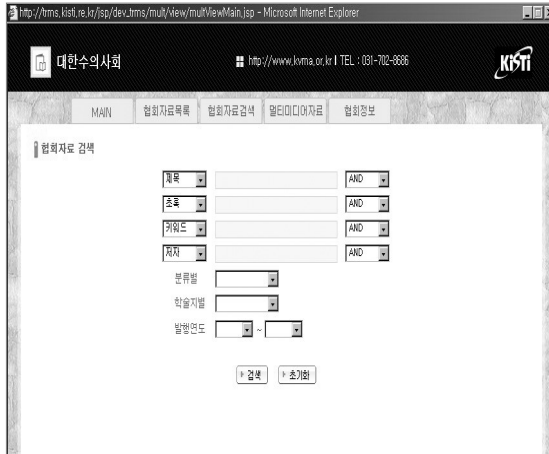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본회 및 각 시·도지부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하여 1박 2일간의 교육 및 토론, 단합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첫날 농림부 김창섭가축방역과장의 '수의관련 정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 교육은 서비스예절에 관한 교양강좌와 정영채회장의 '수의계현안 상황 소개', 우연철 기획실장의 '수의관련 법령개정 현황 소개'로 이어졌다.

저녁식사 후에는 본회 및 각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가한 수의사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와 직원들이 참석한 수의사회 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밤 9시부터는 경기도지부 김영철상임이사의 사회로 다과회등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은 임직원 전체가 참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인근 등산로를 따라 등산하며 심신을 수련하는 일정을 진행하였다.

정영채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워크샵을 통해 수의사회와 수의계가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협회마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고, 강호 사무총장은 “연초 임원선거를 통해 새로운 임원들이 많아진 해이므로 수의계 현안에 대한 소개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였으며 처음 치러진 행사인 만큼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더욱 효율적인 교육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행사를 평가 하였다.

중이며, '05년 12월 중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작업이 완료되면 회원에 한하여 우리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홈페이지 내의 “협회마을”에서 우리회 창립이래 발간된 대한수의사회지 전권에 대한 검색 및 원본열람이 가능하며, 타 기관·단체 및 학회 등의 간행물에 대하여도 정보검색 및 원본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협회정보화 지원사업 계약

우리회(회장 : 정영채)에서는 지난 10월 28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회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협회정보화 지원사업은 협회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을 DB화하여 회원들이 해당 협회 및 타 단체의 간행물 등 정보를 통합검색하여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현재 DB작업이 진행

참여연대,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 보고서”발표

참여연대는 한국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년도별(2001년~2004년) 항생제 판매실적’과 관련 외국자료를 분석해 오늘(4일) 우리나라의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연간 1,500톤으로 이는 축산물 생산량이

우리나라인 1.2배 정도인 덴마크에(년간 94톤 사용) 비해 16배나 많은 사용량이며, 축산물 생산량이 2배에 이르는 일본에(년간 1,084톤) 비해서도 1.5배나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산물 생산량이 무려 24배나 많은 미국도 항생제 사용량은 우리나라보다 3.8배 정도 많은 수준에 그쳐 축수산업의 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은 국민의 건강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항생제 사용 감축을 위해 현 시점에서 시급한 정책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수의 추가 감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배합사료 첨가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합당한 것이며, 지난해 말 농림부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수를 감축하였으나, 농가에서 잘 쓰이고 있지 않은 항생제를 중심으로 감축함으로써 항생제 감소효과는 거의 없는 바 실질적으로 쓰이는 항목을 중심으로 배합사료첨가 항생제의 추가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배합사료제조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료제조과정에서 발행하는 위법적인 항생제 남용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료회사를 상대로 기준외 항생제 사용여부, 사용량 준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검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절반정도가 수의사 처방없이 농가에서 자유롭게 사용되고 현실에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배합사료첨가 항생제수 감축만으로 항생

제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요주의약품(항생제) 대해서는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항생제 사용 교육을 위한 사업계획 마련과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잔류물질 검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항생제 실태에 대한 두 번째 이슈리포트를 낼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림부 “항생제 사용 절감 연구모임” 운영

최근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문제, 식육 중 잔류문제 등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수의 및 축산 관련 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동물용 항생제



항생제 사용절감을 위한 연구모임

사용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4년 10월 25일 개최한 “항생제 사용절감방안 검토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항생제 사용 절감 연구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연구모임은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문한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우리회, 학계, 지자체, 축산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동물약품업계 등에서 77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2006년 9월까지 분기별로 1회의 연구과제 발표를 포함한 회의를 개최하고 제5차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항생제 사용절감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8일 개최된 제1차회의에서는 연구모임 구성과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으며, “항생제 등 항균물질 특성과 가축사육 형태별 항생제 사용실태평가”(검역원 방역과장),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와 잔류위반내용 평가”(검역원 독성화학과장), “항생제등 항균 물질별 내성균 출현 및

감수성 검사 실태”(검역원 세균과장)에 대한 연구과제발표가 있었다.

차기회의에서도 각 분야별로 항생제사용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우리회에서는 2006년 5월에 개최되는 제4차회의에서 항생제 사용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회 이우재 명예회장 한국마사회장 취임

지난 4월 22일(금) 오전 11시 과천 KRA(한국마사회)본관 대강당에서 우리회 이우재 명예회장의 한국마사회장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마사회 역사상 최초로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된 이우재 회장은 한국마사회 회장추천위원회로부터 공기업 최고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업경영능력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받은 결과,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현장 경험, 지식 등이 뛰어날 뿐만아니라, 과거 국회의원 시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KRA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사행산업규제 및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KRA가 재도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자로 평가되어 회장으로 추천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이우재 회장은 취임식에서 “매출액 감소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개혁과 혁신에 매진할 것”이라며 KRA와 경마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 김문수 의원, 안영근 의원이 참석해 축사의 말을 전했다.



이우재 한국마사회장 취임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원장 취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신임 강문일원장은 지
난 5월 20일(금) 오후
2시 검역원 대강당에서
3대 원장 취임식을 갖
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취임식에서 강문일
원장은 “21세기에 접어
들면서 수의분야 영역
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혁신적 패러다임의 확장
선상에서 이제는 단순히
양축가나 그와 관련되는
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제
한적인 시선에서 우리 일
반 국민 전체로 확장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업무의 대상으로 확대해
야 한다”며, “윤리적 모
토로서 ‘믿음’과 ‘청렴’의

치기준아래 책임운영기
관장에게 주어진 자율권
을 최대한 조화롭고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21세기형에 걸맞는 기
관으로의 변화를 제안
한 강문일원장은 2001
년부터 2003년까지 전
남대학교 수의과대학장
을 역임한바 있다.

한국동물복지협회 “반려동물 복지 컨퍼런스” 개최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이하 ‘동물복지협회’)에
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COEX 컨벤션센
터에서 반려동물 복지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동물복지협회와 세계동물보호협회
(WSPA : World Society for Protection of
Animals)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동물복지협회
와 동물자유연대가 공동주관하였으며, 우리회, 삼
성에버랜드, KTF등에서 후원하였다.

우리회 정영채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나라



반려동물복지컨퍼런스

에서 처음 개최되는 컨퍼런스인 만큼 인간과 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였다.

동물복지협회 주최경대표는 “예로부터 인간 생활과 밀접한 위치에 있어온 반려동물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주어왔으나, 반려동물과 관계하는 사람들의 관리 미숙 및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인간의 이익과 편의 위주였던 관점과 규제에서 벗어

나 이제는 동물의 입장을 고려한 인도주의적인 제도 정착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들간에 걸쳐 진행된 학술발표에는 WSPA와 영국 RSPCA, 유럽 Pet 네트워크, 싱가포르 AVA 등에서 온 동물복지관련 전문가들과 국내의 동물단체들과 한국동물병원협의회 및 수의과대학에서 연자로 참여하여 외국의 정책 사례와 국내의 상황을 주제로 동물보호정책과 유기견관리 및 동물과 인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 아 래 -

1 일본	
일정	검역 준비 절차
8개월전	○ 검역증명서(일본양식) 준비 - 일본동물검역소 홈페이지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하여 일본에서 요구하는 검역증명서를 입수 - 아래항의 검역준비절차를 진행하면서 검역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
	○ 마이크로칩사술 - 최소 3개월령이상, ISO 11784 규격제품권장
	○ 1차 광견예방접종 - 불활화백신만 유효함
7개월전	○ 2차 광견예방접종 - 불활화백신만 유효함
6개월전(180일이상)	○ 광견예방접종에 따른 항체가 검사 - 일본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검사시설에서 검사해야함 - 혈청 1ml당 0.5IU 이상
	○ 혈청검사를 위한 채혈후 국내에서 180일간 대기 필요
40일전	○ 수입신고서 제출 - 도착예정 공항, 항만을 관할하는 일본동물검역소에 제출 - 수입신고서제출 후 수입승인서 수령
2일전	○ 예방접종증명서발급 - 광견예방접종을 실시한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검역증명서의 승인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각 지원 또는 출장소)에 제출 ○ 검역증명서 승인 - 검역준비절차 동안 작성된 검역증명서(일본양식)를 우리나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각 지원 또는 출장소)에서 승인

3 대만

일정	검역 준비 절차	참고
광견병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접종:선적전 180일~1년 ○ 2차 접종 : 선적전 1년내 	90일령 이상
수입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 최소 30일 전에 도착지 동물검역기관에 수입허가 신청 (수입허가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①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 성별, 마이크로칩 번호, 연령, 광견병 예방접종일, 백신접종의 1차 또는 2차 접종인지 여부등 기재 ② 수입자 여권 및 주민등록증 사본 ③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결과(0.5IU이상), 혈액채취일(선적전 180일~2년) 	임신축은 임신 4주 이하만 수입허가
수입검역신청	○ 수입허가서, 검역증명서, B/L, 세관신고서 첨부하여 검역신청	
검역증명서 기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품종, 성별, 연령, 마이크로칩 번호 ② 광견병 불활화 백신접종일 및 백신접종의 1차 또는 2차 접종인지 여부 ③ 수출검역시 수출동물은 광견병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음 ④ 광견병 예방 접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결과(0.5IU이상), 혈액 채취일(선적전 180일~2년) 	
수입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기간 : 21일 ○ 검역증명서 및 광견병 예방접종 사항 확인하고 가족 전염성 질병 감염 임상증상 발견되지 않으면 검역증명서 발행하고 수입동물 개방 	

※ 우리나라는 광견병 발생국임.

일본 · 대만 등의 동물검역규정 변경

지난 '05년 6월 일본과 대만, 호주(일부변경)의 동물수입검역관련 규정이 변경되었다.

현재 동물을 동반하여 여행할 경우 각 나라별로 요구되어지는 검역준비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준비하여 출국해야 하며, 미국 · 캐나다 · 러시아 등과 같이 특별한 검역준비절차를 요구하는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먼저 출국하기 최소 한달전에 동물병원에서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한 수의사

로부터 광견병예방접종을 기재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동물과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각 지원 또는 출장소)에 가서 검역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역을 실시한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해야 한다.

일본 · 대만 · 호주와 같이 별도의 검역준비절차를 요구하는 나라들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출국전 준비하여야 해당국가에 입국한 후에 계류 또는 반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별한 검역규정을 요구하는 나라들의 경우 대부

분 ISO11784규정에 따르는 마이크로칩의 시술과 2차에 걸친 광견병예방접종(불활화 백신) 및 혈청검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 대만의 검역준비절차는 아래와 같다.(기타 국가 및 자세한 사항은 우리회 홈페이지 “회원자료실”을 참고)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일부변경

지난 2004년 8월 11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의 보관기준이 2005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할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일부 병·의원 등에서 적정 전용용기 미사용등 미흡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5년 6월중 전국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을 대상으로 보관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각 동물병원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감염성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감염성폐기물 관리요령’의 전문은 우리회 홈페이지 회원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및 동물병원내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요약

- 동물병원배출 감염성 폐기물의 분류
- 보관기준
 - 전용용기에 사용시 처음 감염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일자(포장연월일에서 사용개시연월일로 변경)를 기재하여야 함
 -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조직물류)는 발생시부터 냉동보관하여야 함
 -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함
- 보관기간
 - 동물병원(위탁처리자) : 15일 이하, 단 치아는 60일까지 보관가능
 -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기타 부득이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보관가능
 - 배출자의 보관기간은 감염성폐기물이 발생되어 전용용기에 담는 시점부터 적용
 - 보관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보나, 폐기물 처리업소(자가처리시설 포함)의 경우 해당 공휴일에 처리시설을 가동한 때에는 그 공휴일을 만료일로 봄(보관기간중의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

	보관용기 재질	도형색상
손상성 및 액상의 폐기물	합성수지류 의무사용항색	
조직물류 및 동물사체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 선택사용	적색
기타 감염성폐기물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 선택사용	오렌지색

※ 손상성폐기물의 전용용기인 합성수지류 용기에서 내부 비닐주머니 제거

반려동물건강수첩 제작

우리회에서는 동물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동물병원 전용 반려동물건강수첩(아래)을 제작하였다. 건강수첩에는 개, 고양이, 토끼 등의 예방접종·구충제·심장사상충 예방약 투약관련 안내 및 접종기록란, 반려동물 에티켓, 반려동물 길들이기, 각 나라별 검역규정 요약 안내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록된 내용에 대하여는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아 래 -

□ 반려동물건강수첩 안내

- 크기 : 18×11cm
- 페이지수 : 총 36페이지
- 신청단위 : 500부 단위
- 주문신청 : 각 시·도지부

※ 필요하신 회원여러분께서는 우리회 각 시·도지부를 통하여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수의사회**

